

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3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」 사무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교육, 복지,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(승객)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통회관에 위탁중인 업무로서,
- 나.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기관과 민간위탁(재위탁)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」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개요

- 위탁기간 : 2023. 3. 1. ~ 2026. 2. 28.(3년)
- 수탁기관 :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예정
- 위탁금액 : 1,491,849천원(민간위탁금, 2023년 예산편성안)
- 선정방법 : 재위탁
- 위탁업무

- 운수종사자의 교육
 - ▶ 신규교육(16시간), 보수교육(4시간), 법령위반자교육(8시간)
 -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·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
 - ▶ 사우나·헬스클럽 운영, 에어로빅·댄스스포츠·요가·탁구교실 운영
 -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·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및 관리
 - ▶ 운수종사자 복지쉼터, 사무실 임대·대관
 - 시민에 대한 교통문화 제도·창달 사업
 - “교육원”의 시설물·장비 등 유지관리 및 운영
 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시설현황
- 위 치 : 서울시 관악구 남현1길 38-10(남현동 1063-6번지)
 - 면 적 : 대지 1,650.1㎡, 건물 5,222.67㎡, 지상5층, 지하1층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현황

○ 추진근거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3항
-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
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(조직담당관-10999호, '21. 10. 12.)

○ 추진현황

- '01. 7. 19. ~ '04. 8. 31.(3년) : 최초위탁(수탁법인 : (재)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)
- '04. 9. 1. ~ '07. 8. 31.(3년) : 재위탁(수탁법인 : (사)전택노련복지협회컨소시엄)
- '07. 9. 1. ~ '10. 8. 31.(3년), '10. 9. 1. ~ '13. 11. 30.(3개월 연장) : 재계약
(수탁법인 : (사)전택노련복지협회컨소시엄)
- '13. 12. 1. ~ '16. 11. 30.(3년), '16. 12. 1. ~ '17. 5. 31.(6개월 연장) : 재위탁

(수탁법인 : (사)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복지협회)

- '17. 6. 1. ~ '20. 2. 29.(3년) : 재위탁(수탁법인 : (사)서울특별시교통회관)

- '20. 3. 1. ~ '23. 2. 28.(3년) : 재계약(수탁법인 : (사)서울특별시교통회관)

다. 재위탁 필요성

-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·복지·문화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(단체)과 재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업무 승계 도모
 - 수탁 민간기관(단체)의 풍부한 시설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
 - 전문위탁서비스 활용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
 - 시민을 위한 복지 및 문화사업도 병행하여 운수종사자 가족과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의시설, 휴식공간 등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함
-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업무와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업무로써 관련 분야의 사업 연속성이 요구됨

<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>

- 평가일시 : '22. 6월('22년 조직담당관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)
- 평가기관 : 한국산업관계연구원
- 평가점수 : 75.05점(총 24개 등급(S~D0) 중 21개 "A0" 이상 획득)
- 평가항목 : 예산집행 효율화, 사업 활성화 개선, 사업성과, 만족도 평가 등
- 평가결과 :
 - 우수사항 : 자체적인 예산절감 노력으로 2020년 대비 2021년 공공요금을 50.4% 절감하였으며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코로나-19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개인택시 신규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횟수를 확대하였고,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목을 신설하고 교육교재를 업종별로 분리 발간하여 교재의 품질을 제고 하고자 노력함
 - 개선사항 : 분기별 예산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2/4분기에 집행률이 저조한 경향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방식을 다양화하며 온라인과 SNS 채널별로 이용객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분석하여 사업관련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코로나-19이후에는 모든 사업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
 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(연수기관의 지정 등)
 - 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(운영의 위탁)
 -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- 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

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(조직담당관-10999호, '21. 10. 12.)에 의거,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보류('22. 7. 21.) 및 위탁기간 만료('23. 2. 28.)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 상정

다. 기 타

-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(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-31376, '22. 6. 23.)
-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2. 7. 21.) : 심의보류
-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2. 10. 6.) : 적정

※ 작성자 : 택시정책과 장애인콜택시팀 이현승 (☎2133-2387)